제335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0. 6.(목)

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·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69
제출일자	2022. 9. 23.
회부일자	2022. 9. 28.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·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·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자·출연기관	사 업 명	출자출연 예 정 액	비고
계	**4개 기관**	**5개 사업**	**7,450,000**	
1	경상북도경제진흥원	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	1,250,000	중소벤처 기업과
2	경북신용보증재단	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	2,000,000	
3	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운영	1,500,000	
4	경북테크노파크	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 조성	1,200,000	
5		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	1,500,000	

4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자·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출자출연 여부만 논의하고,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.

○ 먼저,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31 및 「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인건비, 경상경비 등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,

> **◆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**
> 제32조(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>
> **◆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**
> 제7조(재산출연등)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·건물·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○ 둘째,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 및 「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도내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며,

> **◆ 지역신용보증재단법**
> 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> 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>
> **◆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**
> **제3조(출연금)** 경상북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○ 셋째,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은 「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인건비, 센터운영비, 사업비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> **◆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**
> 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>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마지막으로,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금 2건입니다.

- 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는 도내 스타트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680억원(도 60억원)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, 도 출자액(60억원)의 200% 이상(165억원 이상)을 지역 소재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

- 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’는 도내 스타트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295억원(도 50억원)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> **◆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**
>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> 1. 벤처투자조합
> 2. 모태조합
> 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○ 따라서, 2023년 일자리경제실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자·출연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·출연의 필요성,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자료 1

〈연도별 출자·출연금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자출연기관	사 업 명	금 액				비 고
		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
계	**4개 기관**	**6개 사업**	**7,834,000**	**56,126,000**	**10,100,000**	**7,450,000**	
1	경상북도 경제진흥원	기관운영 지원	1,334,000	1,126,000	1,300,000	1,250,000	중 소 벤 처 기업과
2	경북 신용보증재단	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	2,000,000	50,000,000	2,000,000	2,000,000	
3	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	기관운영 지원	1,0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
4	경북테크노파크	경북 행복기업혁신벤처 펀드 조성	1,500,000	1,500,000	1,800,000	1,200,000	
5		경북형 지역뉴딜 벤처 펀드 조성			1,500,000	1,500,000	
6		창조경제펀드(2호) 지원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0	

참고자료 2

〈관련 법령〉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참고자료 3

'23년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예산요구현황 및 세부산출내역

□ 예산요구현황 : 출연금 1,250백만원(전년대비 12백만원 감액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	전년도(2022년) 요구액	전년도(2022년) 반영액	요구액 (2023년)	증 감	비 고
계			1,300	1,262	1,250	△12	
	지원인력 인건비		1,140	1,102	1,150	48	
		인건비	879	841	950	109	- 보수: 764백만원 - 기타직: 61백만원 - 퇴직급여: 86백만원 - 직무수행경비: 39백만원
		복리후생비	176	176	77	△99	
		성과급	85	85	123	38	
	시설유지관리비		160	160	100	△60	- 화장실 리모델링 총예산: 440백만원(4년)

□ 세부산출내역

❍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지원인력인건비 **1,150백만원** 요청

- '23년 총 인건비 예상액 4,089백만원 중 **최소지원인력인건비*** **1,554백만원 중 일부 1,150백만원** 요청

  ※ **지원인력인건비의 25%**인 **404백만원은 진흥원 수익으로 충당**

* 최소지원인력: 원장, 본부장, 실장, 본부소속지원팀(전략기획팀, 경영지원팀, 정보화지원팀)

❍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**100백만원** 요청

- 화장실 타일 이탈현상으로 매년 수리비 과다발생 및 안정사고 우려
-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 수리필요
- 산출기초 : 20백만원 × 22개 = 440백만원(예상소요기간: 4년)

참고자료 3-1

'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 현황 (1회추경 반영)

□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道 출연금	수탁사업비	기 타 (이월사업비, 수수료 등)
예산액	90,086	1,262	60,281	28,543

■ 道 출연금·위수탁수수료 ('22. 9월말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道 출연금	897	802	881	934	1,291	1,126	1,262
위수탁 수수료 (자금수수료포함)	431	827	1,219	1,985	3,918	3,610	3,074
합 계	1,328	1,629	2,100	2,919	5,209	4,736	4,336

□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운영비 (인건비, 경상경비 등)	사업운영비	기 타 (법인세 등)
예산액	90,086	5,588	60,281	24,217

■ 세출예산 세부내역

(단위:백만원)

비목별	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계		14,084	28,980	37,031	67,809	130,824	122,175	90,086
운영 경비	인건비	1,272	1,450	1,595	2,175	2,657	2,867	3,033
	물건비	950	998	1,270	1,462	3,182	2,581	2,555
	합 계	2,222	2,448	2,865	3,637	5,839	5,448	5,588
법인세 등		276	270	295	843	3,937	11,248	11,916
사업비(수탁,대행)		11,586	26,262	33,871	63,329	121,048	105,479	72,582

※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128억 감액, 청년일자리지원 44억 감액 등

참고자료 4

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

□ 법적 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,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

< 지역신용보증재단법 >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

③ 기업의 출연금 ④ 기타

<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>

제3조(출연금) 경상북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기본재산 출연 필요성

○ **'23년 출연금 20억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·소상공인에 보증 공급(보증서 발급)을 위한 기본 재원으로 활용되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**

- '19년까지 경북재단의 운용배수[1]는 7배 내외로 안정적으로 보증운용 중이었으나,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규모 및 운용배수가 급증한 상태[2]임
- 운용배수 급증 원인은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기인
- 기본재산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'22년말 재단의 예상 운용배수는 8.94배에 이를 전망으로 지속가능한 적정 운용배수 7.55배[3]를 초과하여 정상 보증 운영에 차질 예정
  - 더구나, 시중은행이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신용 대출 심사 등을 강화 조치에 따라 신용여력이 낮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전망
- **(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연착륙 지원을 위한 보증여력 확충 절실)**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원 20억원 지원 필요

---

1) (정의)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, 기본재산으로 창출한 보증규모를 의미

2) '22.8월말 기준 : 7.92배수

3)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 「리스크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 규모 분석」참조,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은 기본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된 보증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보증여력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또한, 그만큼 대위변제에 따른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

<전국·경북재단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(억원)>

구 분	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8월
16개 재단 (평균)	기본재산 및 이월이익금	2,186	2,212	2,310	2,689	3,086	3,442
	운용배수	5.30	5.57	6.04	9.16	8.72	8.47
경북 재단	기본재산 및 이월이익금	1,754	1,793	1,842	2,141	2,809	3,163
	운용배수	5.65	5.87	7.05	12.19	8.61	7.92

※2022년 9월 전국재단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미취합

□ 기본재산 조성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8년 이전	'18년	'19년	'20년	`21년	'22년 8월	누 계
기본 재산	중앙	377	0	0	131	5	53	566
	도	551	10	10	10	220	10	811
	시·군	426	42	79	179	293	103	1,122
	금융	654	86	126	162	177	165	1,370
	기타	12	0	0	0	0	0	12
계(A)		2,020	138	215	482	695	331	3,881
당기순손실(B)		△267	△98	△166	△183	△7	-	△721
순자본(A-B)		1,753	1,793	1.842	2,141	2,829	3,169	3,169

※ '22년도 당기순손실 미반영

※ (금융기관) 은행별 의무출연(보증금의 0.04%) 및 협약보증 출연

참고자료 5 **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운영**

□ 출연금 편성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2	2023	증감	비고
계	3,380	3,861	482	•투자 전문인력 고용 •스타트업 지원확대 등 •국비/도비 6:4 매칭 *임대료 지원은 제외(시비)
국비	2,019	2,200	182	
도비	**1,200**	**1,500**	**300**	
시비	161	161	0	

○ 편성근거 : 2023년도 창조센터 소요예산 협조요청

- 도비 최소 15억(인건비 20%, 경상비 40%, 사업비 40%)

※ '22년 운영비 : 34억원(인건비 12.5, 경상비 8.5, 사업비 13)

□ 사업내용

○ 스타트업 발굴, 육성 → 스타트업 스케일업 및 경쟁력 강화

- 각 기관별 창업, 스타트업 관련 사업 창조센터로 일원화
- 신규사업 발굴, 중기부 사업 매칭, 중기부 사업비 확보 등

○ 삼성전자와 협업사업으로 C-Lab Outside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

- 접근성이 좋은 영남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장소 조성
- 매년 우수 스타트업 5개 내외 삼성전자 육성프로그램 참여 지원

○ 정원조정 : 현행 19명 → 23명(4명↑)

- 팀장급 전문 인력 확충(펀드 및 금융, 액셀러레이팅, 벤처지원)
- TIPS 파트너(운용사) 가입에 필요한 투자역량 강화 도모

※ 현재 5개 센터 TIPS 파트너 가입(광주, 울산, 경기, 충북, 경남센터)

참고자료 5-1

타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현황

연번	센터명	국비	지방비	합계	지방비 비율
1	서울	2,693,995	1,500,000	4,193,995	36%
2	부산	2,272,000	1,700,000	3,972,000	43%
3	대구	2,460,000	3,000,000	5,460,000	55%
4	인천	1,809,000	1,700,000	3,509,000	48%
5	광주	1,500,000	1,000,000	2,500,000	40%
6	대전	1,771,000	1,182,000	2,953,000	40%
7	울산	1,802,000	1,200,000	3,002,000	40%
8	세종	1,387,000	926,630	2,313,630	40%
9	경기	2,250,000	1,500,000	3,750,000	40%
10	강원	2,431,000	2,390,000	4,821,000	50%
11	충북	2,143,000	2,100,000	4,243,000	49%
12	충남	1,802,000	1,200,000	3,002,000	40%
13	전북	2,051,000	1,660,000	3,711,000	45%
14	전남	2,159,000	1,728,700	3,887,700	44%
15	**경북**	**2,019,000**	**1,361,000**	**3,380,000**	**40%**
16	경남	1,832,000	1,675,000	3,507,000	48%
17	제주	2,128,000	2,000,000	4,128,000	48%

참고자료 6-1

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

□ 투자조합 개요

◦ 펀 드 명 : 기술혁신전문 G&G펀드1호

◦ 결 성 액 : 680억원(도비 60억원)

◦ 운용기간 : 2020년 ~ 2028년(8년) * 결성일로부터 8년(투자 4년, 회수 4년)

◦ 운 용 사 : 포스코기술투자(주),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(주)

◦ 투자대상 :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

- 道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, 농협 및 대구은행의 1배수 이상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(165억원 이상 투자)
- 기준수익율 연6%

□ 추진경과

◦ ('20. 07. 1) 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 펀드운용사 선정 공고

◦ ('20. 07. 28) 펀드운용사 선정(포스코기술투자,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)

◦ ('20. 09. 16) 중소벤처기업부 펀드 결성계획 승인

◦ ('20. 09. 22) 1회 출자금 납입(도비-15억원, 道→ 경북테크노파크)

◦ ('20. 09. 28) 투자조합 결성총회 개최

◦ ('20. 10. 07) 업무협약식(MOU) 개최

◦ ('21. 02. 03) 2회 출자금 납입(도비-15억원, 道→ 경북테크노파크)

◦ 3회 출자금 납입(도비-18억원, 道→ 경북테크노파크)

- ('22. 02. 17) 6억원, ('22. 03. 30) 12억원

참고자료 6-2

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

□ 투자조합 개요

◦ 펀 드 명 : 포스텍홀딩스 지역뉴딜 벤처펀드

◦ 결 성 액 : 295억원(도비 50억원)

◦ 운용기간 : 2022년 ~ 2031년(10년) * 결성일로부터 10년(투자 4년, 회수 6년)

◦ 운 용 사 :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(주)

◦ 투자대상 :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

- 道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, 농협 및 대구은행의 1배수 이상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(145억원 이상 투자)

□ 추진경과

◦ '21. 12월 : 포항공대 기술지주와 펀드 결성 관련 업무협의

◦ '22. 1. 7. : 한국모태펀드 제안서 접수, 최종선정(22.2.3)

◦ '22. 4월 : 출자출연동의안 제출 및 추경예산 확보

◦ '22. 5월 : 펀드규약 협의

◦ '22. 6. 31. : 경북도 펀드 출자 및 조합 결성 완료

◦ '22. 7. 21. : 업무협약식(MOU) 개최

◦ '22. 8. 30. : 1회 출자금 납입(도비-15억원, 道→ 경북테크노파크)